

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2020년 7월 10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6호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을 삭제한다.

④항 <삭제>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
	담당 성명 (전화번호)	황 기 성 (390-7606)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p>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p> <p>① <생략></p> <p>② 임직원은 <u>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p> <p>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⑥ ~ ⑧ <생략></p>	<p>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u>-----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⑤ ----- ----- -----<u>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u>-----.</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